대구우편집중국 공고 제2016 - 4호

# 2016년도 제 4회
# 기간제근로자(우정실무원) 채용계획 공고

대구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(우정실무원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02월 11일

**대구우편집중국장**

## 1. 채용직종 및 인원

| 채용직종 | 근무형태 | 채용예정 인 원 | 담당업무 | 근무기관 |
|---|---|---|---|---|
| 기간제근로자 (시간제 우정실무원) | **오전파트(4시간) (08:00 ~ 12:00) 주5일근무 (월~금)** | 1명 | - 우편물 구분작업<br>- 우편물 상하차작업 | 대구우편집중국 (물류총괄과) |
| | **야간파트(4시간) (03:00 ~ 07:00) 주5일근무 (화~토)** | 2명 | | |
| | **저녁파트(4시간) (18:00 ~ 22:00) 주5일근무 (월~금)** | 2명 | | |

**※ 시급 6,030원, 4대보험가입, 주휴수당**

## 2. 응시자격 및 요건

○ 응시자격(모두 충족해야 함)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> **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**
> 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>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>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>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>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>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> •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> 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~ 55세 미만
-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 3년이 경과한 자



## 3.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

가.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

○ 응시자의 자격요건, 결격사유 등을 심사

나.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

○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

○ 예의 · 품행 및 성실성, 건강상태 등

## 4. 응시서류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16.02.16(화) ~ 2016.02.18.(목) **09:00~18:00 (3일간)**

나. 접 수 처 : 대구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물류총괄계(053-380-7115)

다. 접수방법 : 대구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물류총괄계(토,일은 수위실)에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(2016.02.18. 18시 도착분에 한함)

## 5.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

가. **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16.02.19(금)** 개별통지

나. **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: 2016.02.23.(화) 13시, 대구우편집중국 3층 소회의실**

다. **최종합격자 발표 : 2016.02.24.(수),** 개별통지

※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, 합격포기, 채용결격사유,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. 제출서류

가. 1차(서류전형) - 이력서(붙임 서식, **사진부착**) 및 자기소개서(임의양식) 각 1부

나. 최종합격 시 - 주민등록초본 1부,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가정법원발급) 1부, 우체국통장사본 1부

※ 각 서류는 공고일(2016.02.11)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.

## 7. 기타사항

가. 기간제근로자(우정실무원)는 비정규직으로 **최초 계약기간은 3개월**이며, 연장 가능하나 예산 및 물량의 감소, 업무실적 등에 따라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나.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다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3일전까지 대구우편집중국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/kb/702c)에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.

라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물류총괄계(☎053-380-711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31호 서식] (제22조제1항, 제73조제1항, 제92조제1항, 제107조제1항, 제108조제1항 관련)

# 표준이력서(안) 양식

(앞장)

## 1. 인적사항

| 지원구분 | 신입( ) 경력( ) | 지원분야 | | 접수번호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성 명 | (한글) | | 생년월일<br>(주민번호 앞자리) | . . . | |
| 현주소 | (주민등록주소) | | | | |
| 연락처 | (본인 휴대폰)<br>(비상연락처) | | 전자우편 | | |

## 2. 교육사항

| 직무관련 학교교육 | 최종학력 □ 고졸이하 □ 고졸 □ 대학 재학중 □ 대졸 □ 대학원 재학중 □ 대학원 수료 □ 대학원졸 | |
|---|---|---|
| | 전공 | 부전공 |

| 직무관련 직업교육 | 교육 과정명 | 주요내용 | 기관명 | 교육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## 3. 근무 경력사항 (채용 우대 근무경력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)

| 근무기간 | 기관(회사)명 | 직위/역할 | 담당업무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## 4. 결격사유 존재 유무(있음인 경우 세부내역 해당여부 칸에 표시)

| | 결격 사유 구분 | 해당여부 |
|---|---|---|
| □ 있음<br>□ 없음 |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| □ |
| | 파산선고 후 미복권 | □ |
| |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에 따른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이후 5년 미경과 | □ |
| |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 2년 미경과 | □ |
| |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이후 그 선고유예 기간 중 | □ |
| |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| □ |
| |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이후 2년 미경과 | □ |
| | 징계 파면 처분 이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이후 3년 미경과 | □ |
| | 우정사업조직에서 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 이후 3년 미경과 | □ |



(뒷장)

## 5. 운전 관련 자격사항 (채용 자격요건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)

| 자격분류 | 자격증명 | 발급기관 | 취득일자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## 6. 운전 경력사항 (다수일 경우 최근 발생일자부터 역순으로 기재)

| 취소·정지 | | 운전사고 | | 법규위반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발생일자 | 내역(면허종류) | 발생일자 | 인적피해내역 | 발생일자 | 위반내용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## 7. 정보화 등 자격사항 (채용 우대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)

| 자격분류 | 자격증명 | 발급기관 | 취득일자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※ 자격분류 :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'국가공인',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'민간공인'으로 기재

## 8. 직무관련 기타 활동

| 활동구분 | 소속조직/활동명 | 활동기간 | 활동내용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## 9. 기타 사항

| 구 분 | 해당여부 |
|---|---|
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 □ |
|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| □ |
| 「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| □ |
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| □ |

1.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2. 향후 위 기재 사항 중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**지원일자:** **지 원 자:** **(인)**

※ 본인 자필로 작성하며, 기재된 사항이 합격자 발표 이후 계약서 작성 시 제출된 자료와 대사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거나 허위 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※ 응시자 부주의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